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일시 : 2024. 4. 17.

장소 :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개최계획 ..	1
II.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5
1. 2024년도 평가개요 및 기본방향	7
2. 2024년도 평가 주요 내용 및 추진사항	10
3.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19
III. 신뢰도 저해행위 예방 및 유공포상 안내	21
IV. 2024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	29
1. 평가지표 수립 방향	31
2. 청렴노력도 지표 체계 및 배점(안)	32
3. 관련 서식	68
4. 평가지표별 담당자 현황	79
V.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별 청렴조사평가과 담당자 현황 ...	81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개최계획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24. 4. 17.(수) 13:00~17:00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본사 2층 대강당
- 참석 대상 : 475개 평가 대상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일 시	참 석 기 관
4.17.(수) 13:00~17:00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47개), 광역지자체(17개), 기초지자체(226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55개)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13개)

- 주요 내용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주요내용 안내 및 세부평가 모형에 대한 의견수렴

세부일정

시 간 (분)	주 요 내 용
12:40 ~ 13:00 (20')	등록 및 행사안내
13:00 ~ 13:05 (5')	개회 및 국민의례
13:05 ~ 13:15 (10')	인사말씀
13:15 ~ 13:25 (10')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평가모형 설명
13:25 ~ 13:45 (20')	질의응답
13:45 ~ 13:55 (10')	신뢰도 저해행위 및 유공포상 등 안내
13:55 ~ 14:00 (5')	질의응답
14:00 ~ 14:10 (10')	휴식시간
14:10 ~ 16:50 (160')	노력도 평가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17:00	마무리 인사말씀, 워크숍 종료

II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I | 2024년도 평가개요 및 기본방향

1 종합청렴도 평가개요

▣ 목적 및 근거

- (목적)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연혁

- (기존)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 체계 운영
 - ※ (청렴도) 기관 업무를 경험한 외부 국민, 내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을 측정(설문조사) + 부패실태 반영('11년 ~)
 - (시책평가) 연초 설정된 지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기반으로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평가(반부패 경쟁력평가 등 명칭 변경)
- (개편)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 개편 추진('21년)

평가체계

- (구성)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설문) - 부패실태 평가
(발생 현황)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체감도 ('23년 60%)		청렴노력도 ('23년 40%)		부패실태(감점) ('23년 10%)
내용	외부업무 및 조직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 측정	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	조직 내부 구성원이 소속된 기관의 반부패 시책 효과성 체감 정도를 평가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평가
	방식	정량·정성평가	정량·정성평가	정량·정성평가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비중 등은 '23년 기준이며, '24년도 평가를 위해 검토·변경될 수 있음

- (발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 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분석, 자율적 개선노력을 위해 각 기관에는 각 영역별 세부점수(전체기관 및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등) 제공
- (공개) 각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 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 기본방향

- 개편·시행 3년차로,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현재 체계 유지
 - '23년도 종합청렴도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평가모형을 보완·정교화*하고, 전략적 대상기관 선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평가 실시
- * (예시) 종합청렴도 각 영역 내 평가 항목·지표 및 점수 체계 등

■ 보완·변경사항

- (대상)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평가 실시에 따라 '23년 미평가된 기초 군 의회(82개)·구 의회(69개) 신규평가 실시
 -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격년평가로 전환하여 피평가기관의 부담경감 및 평가의 효율성 증진
- ※ 공공의료기관은 짝수년도('24년 실시), 국공립대학은 홀수년도 평가실시
- (체감도)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설문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고,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노력도) 청렴노력도 지표 간소화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노력 집중 기조는 유지하되,
 -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우수사례 전파 활성화 등을 위한 신규 지표 신설
 - '23년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 및 효과성에 비해 평가 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등은 조정·재검토
- ※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공공의료기관은 노력도 특화지표, 지방의회는 노력도 별도지표 적용

Ⅱ | 2024년도 평가 주요내용 및 추진사항

1 평가 대상기관(안)

기본방향

- (선정) 전년도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본방향을 유지하여 매년 평가, 주기별 평가, 중점 평가 대상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
 - 다만, 지방의회 전수평가 및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대상기관 조정

대상기관 선정 기본방향

- (매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주요 공공기관 유형은 **매년 전수평가**하여 지속적인 취약분야 진단·제공
 - (주기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유형은 기관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주기별 평가**
 - (중점) 전수평가 또는 주기별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청렴수준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대상에 포함하여 **중점 평가**
- (유형) 평가의 연속성·시계열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23년 기준 유지**
 - 다만, 다른 법령·기준, 타 정부평가 유형구분,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유형, 의견수렴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실시계획**(4월 ~ 5월)에서 확정

2024년 평가 대상기관

〈 '24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안) 〉

합계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 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사공단)		광역	기초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Ⅰ (시)	Ⅱ (군)	Ⅲ (구)
718	25	22	17	75	82	69	17	32	55	34	34	13	17	75	82	69

※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

※ '24년 평가대상 교육지원청은 추후 실시계획에서 확정하여 통보

○ 매년 전수평가

- (행정기관) 중앙(47*),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교육청(17)
 - * (전년 대비 +1) '23. 6. 5. 재외동포청 신설
 - (공직유관) 공기업(32), 준정부기관(55)
 - (지방의회) 광역의회(17), 기초의회(226)
- ※ 기초 지방의회는 시·군·구 의회별 3년 주기 평가에서 매년 전수평가로 전환.
지방선거 실시 해에는 광역·기초 지방의회 평가 미실시

○ 주기별 평가

- (공공의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10),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 병원은 '24년부터 격년 평가
- ※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격차 해소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패행위 발생 등 필요시 대상 포함 검토
- (국공립대) 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대학 및 과학기술원은 '25년부터 격년평가
- ※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은 번갈아 가며 격년평가 실시하며, '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의료기관 유형부터 평가 시행
('24년)공공의료기관 → ('25년)국공립대학 → ('26년)공공의료기관 → ('27년)국공립대학
- (연구원) '23년 평가 실시한 일정규모 이상 연구원 유형은 격년 평가 대상으로 '24년 평가 미실시

○ 중점 평가

- (중점)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 중 정원 500명 이상('23.3분기 공시 기준) 기관(20*),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중 정원 500명 이상이면서 '23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은 기관(7**)을 원칙상 평가대상으로 하되,
- '23년 중점 유형 중 '23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기관(7***)은 청렴수준 진단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으로 유지

- * 다만, 표본 수 부족으로 설문조사 등 평가 이행이 어려운 5개 기관은 '21년부터 평가 제외(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 **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체육회, 창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보전원
- (지방공사·공단)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중 부동산 직접
 취급기관(16), 교통·도시철도(7*), 시설관리 기관(7) 및 지방공사·
 공단 중 '23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기관(4**)
- * 다만, 표본 수 부족으로 설문조사 등 평가 이행이 어려운 기관(경기교통
 공사)은 제외
 -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남양주시공사, 수원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2 평가 내용 및 방식

1 청렴체감도 영역

■ 기관별 측정업무 발굴·조정

- (발굴) 각급기관이 수행하는 대민·대기관 업무 중 부패개연성이 높고, 관심도·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발굴하여 측정
 -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을 검토해 기존 체감도 측정업무 외 신규업무를 발굴하거나 측정업무의 범위 조정
- ※ 기관의 중점 추진업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재량성이 큰 업무, 부패 사건 지속 발생 업무 등 중점 검토
- (조정) 기존 체감도 측정업무 중 조직이나 업무 변경·폐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거나 표본 수 부족으로 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은 측정 재검토
- 측정업무 2개 이상을 지방청(지사·지역본부 등)에서 수행하는 기관 중 지방청별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청별 측정 결과 제공 검토
 - 산하 행정시·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시·구별 측정 결과 제공
- ※ 지방청 등 측정 신규 요청시에는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의 기관별 담당자와 필요성·가능성 협의
- ※ 지방청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일정 표본규모 이상 조사가 된 경우에만 지방청별 세부 측정결과 제공 가능

■ 평가방식·내용 및 항목

- (방식)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내부 업무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

- 부패인식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100점 만점)하고, 부패 경험 항목의 결과는 부패인식 항목 결과에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

* '22년~'23년 기준 최대 15점 감점 반영

- (내용) 확장된 부패개념에 맞춰 외부·내부 관계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모형 및 항목을 체계화

- 지방의회는 업무·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모형으로 측정

※ '23년 특화모형으로 측정한 공공의료기관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와 같은 체감도 공통모형으로 측정하는 방안 검토(실시계획에서 확정)

- (항목)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항목(외부·내부 동일)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체감도 측정항목(안) 〉

구분			설문항목	내용
외부 체감도	부패 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특혜제공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업무투명	투명한 업무처리
			절차위반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사익추구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소극행정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부패 경험	청렴의무 위반	부패 경험률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부패경험 빈도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내부 체감도	부패 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특혜제공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부당지시	업무수행 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인사위반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투명한 업무처리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내부 조직운영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사익추구	직무관련 영리행위, 직무관련 정보·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 경험	청렴의무 위반	부패 경험률	내부 조직운영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부패경험 빈도	내부 조직운영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세부항목은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4년도 실시계획에서 확정

■ 기본방향

- '23년 평가지표 대폭 개편 이후 2년차로, 평가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표 간소화 및 기관 자율적 개선노력 집중 기조 유지
- '23년도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 및 효과성에 비해 평가 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등은 조정·재검토
- 평가 효율화 및 대상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청렴노력도 지표 간소화(세부과제 기준 전년대비 10% ↓)
- 평가체계는 '추진체계 - 추진실적(가점·감점 포함) - 시책효과성'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 추진체계(2개), 추진실적(9개), 시책효과성 평가 등 총 12개 지표 구성, 구체적인 지표(안)은 별도 첨부 참고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성(안) 〉

구 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① 청렴정책 추진체계	• 반부패 추진계획 및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2개) •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20점
② 청렴정책 추진실적	•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7개)	70점
	• 감점 지표(1개)	최대 12.5점
	• 가점 지표(1개)	최대 1.5점
③ 시책효과성 평가	•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10점

- (강화·보완) 기관별 규모·업무 특성, 취약분야 등을 고려한 반부패 시책의 자율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지표 개선
- 각급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부패 취약분야 발굴·개선에 집중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점수 배점 다단화(5→7등급화) 등 개선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표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 유지
- ※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 공공재정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실적·자체점검 등

- 각급기관의 우수시책 공유 활성화 지표 신설로 부패 취약분야 자율적 개선 활성화 지원
 - ※ 청렴포털에 우수시책·개선 사례를 공유하여 벤치마킹 계기 마련
- (평가방식) **확정지표**(실시계획)에 대한 각급기관의 추진실적과 증빙 자료를 제출(10월)하고 이에 대해 정성·정량평가 실시
 -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성지표는 외부 전문가 평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 주관 평가 실시
 - ※ 정량지표 내 일부 정성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는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내부 구성원 효과성 평가 실시

- (방식)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 시책 추진 효과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평가(설문조사) 실시
 - ※ 청렴체감도 측정 시 병행 실시, 배점은 1개 지표 수준(10점)
- (내용) 필수적인 반부패 제도·시책 중심 5개 항목의 효과성 설문
 - ※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포함)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갑질 개선(행동강령 준수) 노력 등

맞춤형 평가 체계 적용

- (특화) 기관·업무성격이 다른 일부유형*은 일부 지표를 제외**한 특화지표(24년 총 10개 지표) 또는 별도지표로 평가
 - * 기초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 특화지표(공통지표 중 일부지표 제외)
지방의회 → 별도지표
 -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지표 제외
- (방식)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등 필수적인 정성지표를 포함하고, 점수는 최종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중에 따라 반영

개요

- 평가기간* 중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하여 평가에 반영

* '23. 7월 ~ '24. 11월 내 외

평가기준

- (대상) 행정기관 공직자(정무직 포함)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
- (유형) 반부패 법령* 관련 부패사건,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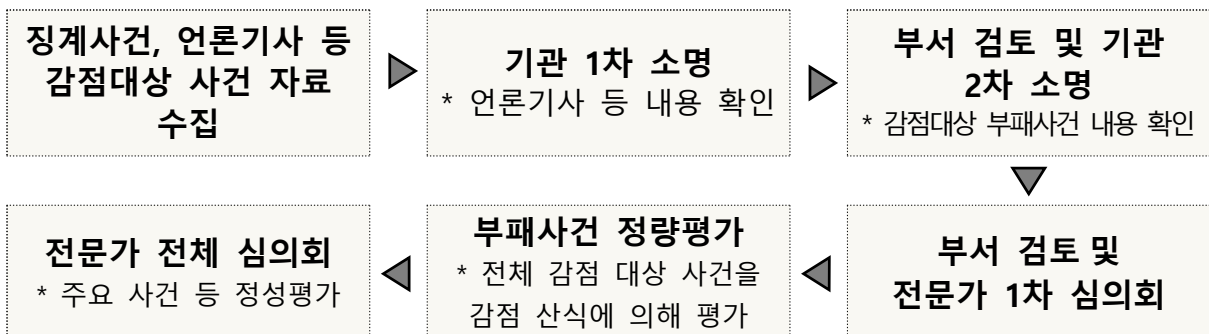
※ 세부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배포(4~5월) 시 구체적으로 안내

※ 기관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에 대해서 현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이 반영된 결과 분석·발표방안 검토(실시계획에서 확정)

평가방법

- 부패행위자의 직위, 기관 총 부패금액, 기관 정원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되,
- 필요시 주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정성평가 실시하여 최종감점 산정

〈 참고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과정에서 호의적 답변 유도, 각종 자료 누락·조작, 지연제출 등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제재 대상

- (적발) 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 조사 응답 등
- (유형) 명부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제재 방법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 조치 필요성 및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 심의·결정

▣ 주의사항

- 통합·개편된 '22년도 평가부터 현지점검 및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가 강화되어, 명부 제출 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을 정확히 준수

※ 자세한 명부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은 실시계획 배포(4월 ~ 5월) 시 구체적으로 안내 예정

III |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결과 활용

- 평가 상위기관 및 담당자 포상, 반부패 정책 국외연수 추진
- 각급기관에 세부 평가결과 제공, 우수 시책사례 홍보·확산

향후 추진일정

-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개최 및 기관·전문가 의견수렴(3~4월)
※ 워크숍 계획 및 일정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4 ~ 5월 예정)
* 세부 평가항목·지표, 제출자료 기준·서식(설문대상자 명부, 청렴노력도 실적보고서, 부패행위자 징계현황 등), 청렴체감도 측정업무 등 포함
-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5월~10월)
 - 반부패 추진계획 및 부패 취약분야 분석 등(5월), 설문대상자 명부·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7월), 청렴노력도 실적 보고서(10월)
- 종합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6월~12월)
※ 대상기관 현지점검(6월~9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별 평가(11월~12월)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24. 12월 예정)
※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발표일정 조정 가능

협조사항

- 청렴업무 담당자 제출(서식 별도첨부) : ~ '24. 3. 22.(금)
- 평가제도 전반, 청렴체감도 측정업무,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24년도 평가 관련 의견제출(붙임 3 서식) : ~ '24. 3. 22.(금)

III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신뢰도 저해행위 예방 및 유공포상 안내

I | 신뢰도 저해행위 예방

1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과정에서 호의적 답변 유도, 각종 자료 누락·조작, 지연제출 등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

※ (주요유형) 명부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종합청렴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22년 개편 이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를 강화(점검·감점 확대 등)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 필요

※ 「'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워크숍책자) 18page 참조

2 신뢰도 저해행위 주요 유형

▣ 청렴체감도 명부 제출기준 위반

- 내부직원 및 측정업무별 외부 민원인의 명부 누락·중복 제출
- 권익위 담당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임의로 무작위 추출 후 제출
※ 청렴체감도 명부는 업무 경험자, 내부직원 전수제출이 원칙이며, 「종합청렴도 실시계획」에 따라 제출범위 지정이 필요한 경우 권익위 담당자와 매년 협의 필요
- 종합청렴도 평가에 불리한 응답 예상자 표본관리(명단 고의 누락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부 제출 거부 등

✓ 위반 예시

- 내부직원 명부(전화번호, 이메일) 중복 및 공무원직근로자 등 누락
- 외부 체감도 측정대상업무의 민원인 명부 누락

✓ 물품·공사·용역계약 건 중에서 금년 청렴체감도 측정 시작('23.7월)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청렴체감도 측정 기간('23.7월~'24.6월)에 계약이 진행 중인 건 누락

- ✓ 물품계약 건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관급자재, 3자 단가계약 건 등 누락
- ✓ 인허가·점검·조사·보조금지원 등 업무 담당부서(사업부서)에서 청렴도 담당부서(감사실)로 명부제출 시 제출 대상기간, 대상민원인 범위 등을 오인하여 제출 누락
- ✓ 다수의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이 동일인(업체 포함)일 경우 중복제거 후 명부제출
 - A 보조금 지급 총 100건 중 30개 민원인(업체) 명부 제출 ⇨ 총 100건 명부 제출 필요

- 행정처분·소송진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 명부 임의 누락

기관 담당자 유의사항

- 종합청렴도 담당 부서(감사실)에서 명부 취합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명부제출 방법 등을 교육하고, 취합한 명부 추가 확인 후 권익위로 제출(시스템으로 민원인을 관리할 경우 감사실 입회 하에 명부 추출 등)

설문참여자 파악 및 호의적 답변 유도

- 특정 대상자 사전접촉 및 조직내부의 체계적인 호의적 답변 유도
- 설문참여자 파악 시도 및 평가결과 유추를 통한 위협·회유
- 종합청렴도 설문조사 참여 안내 시 해당기관의 반부패 추진노력을 홍보하며 간접적으로 호의적 응답 유도

✓ 위반 예시

-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조사 시 해당기관에 호의적으로 답변 유도
 - 호의적 답변 유도성 교육자료, 인트라넷 공지사항, 익명게시판 등 포함
- 종합청렴도 설문시기·응답자 등 파악 시도

기관 담당자 유의사항

- 종합청렴도 설문 참여 독려 시 권익위에서 제공하는 「종합청렴도 조사 안내문」 원문 그대로 공지 요망(호의적 답변 유도 절대금지)

☐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시기 및 허용횟수 위반
 -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내의 조사만 가능하며, 종합청렴도 설문조사 기간(7월~11월)을 제외한 1~6월, 12월 중 설문 완료
-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전 계획 및 조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미제출
 - ※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전 실시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자체청렴도 조사 설문대상 허용 범위(50%) 초과 실시
 - ※ 전체 대상의 50% 이하에 대해서만 설문 시도(설문 성공 수가 아님에 유의)
- 자체청렴도 조사 설문 응답자 익명성 보장 미실시 등

✓ 위반 예시

- 부패경험 문항을 포함한 청렴해피콜을 상반기 중에 여러 회 실시
- 내부 전직원 또는 외부청렴도 측정업무 민원인(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 자체청렴도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공문으로 제출 필요)
- 종합청렴도 담당 부서 외 사업부서 등에서 민원만족도 등 조사 시 부패경험 내용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하며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미준수

3

제재조치 등

- ☐ (적발방법) 평가기관 현지점검, 상시 제보창구 운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시 제보 응답, 청렴체감도 제출 명부 세부 분석 등
- ☐ (제재조치)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 정도(감점, 주의·경고 등) 결정
 - ※ '23년 신뢰도 저해행위로 주의·경고를 받은 기관의 경우 금년에도 위반 시 경미한 위반사항이더라도 감점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

Ⅱ | 종합청렴도 평가 유공 포상

☐ 목 적

-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영예성 향상 및 업무 담당자 등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수여

☐ 포상규모 ('23년 기준)

- (총 29점) 대통령 표창 4점(단체1, 개인3), 국무총리 표창 7점(단체3, 개인4), 권익위원장 표창 18점(개인)

〈 표창 훈격별 포상 규모 〉

	계	단체		개인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종합청렴도 평가 유공	29	1	3	3	4	18

〈 훈격별 추천순 〉

구분	단체			개인		
훈격 (표창 수)	①대표 1	⇒	②국표 3	⇒	③대표 3	⇒ ④국표 4 ⇒ ⑤위표 18

< 참고사항 >

- ◆ 단체표창 수여기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상금 및 부상 지급
 - ※ 대통령 표창(1개 단체) : 상금 1,000만원, 신문고(북) 1채
 - 국무총리 표창(3개 단체) : 상금 700만원, 신문고(북) 1채

☐ 포상추천 제외기관(안)

- 주요 부패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기관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신뢰도 저해행위로 감점을 받은 기관
- 채용비리 전수조사 적발기관
- 청렴 체감도·노력도 중 4등급 이하 포함 기관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재포상 금지기간 대상자(단체 포함)

☐ 향후계획

-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증가 및 우수기관에 대한 영예성 향상을 위하여 포상규모 추가 확대 추진
 - ※ '25.2월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 시 포상 수여 예정

Ⅲ | 반부패 국외 교육훈련

☐ 목 적

-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반부패 국제기구 교육을 통해 청렴정책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

☐ 교육훈련 개요

- (참가인원) 총 20명(권익위 3명, 공공기관 17명)
※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종합청렴도 업무 담당자(실무자급)
- (교육기간) 매년 5월 경(7박 9일) ※항공 이동시간 포함
- (교육기관)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오스트리아 소재)
- (소요경비) 참가 희망기관 교육훈련 대상자의 국외여비 일체는 각 기관별 자체 부담*(IACA 교육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 1인당 국외 여비(항공운임+체재비+준비금) 400만원 이내 소요 예상
- (선발기준) 유공 포상 선발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발

〈 제외기관(안) 〉

- '24년 종합청렴도 유공으로 포상 수여 기관(개인·단체)
- 청렴체감도·노력도 4등급 이하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기관
- 사회적 물의 발생 기관
- 채용비리 적발기관 등

☐ 프로그램(안)

구분	대주제	소주제
PART1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 Modern Challenges & Trends in Combating Corruption • Anti-Corruption Compliance
PART2	Understanding Corruption	• Corruption Risk Analysis • Corruption Risk Analysis Case Studies
PART3	Fraud Prevention	• Organizational Integrity(I)(II) • Study Visit to UNODC
PART4	Corruption Risk Analysis	•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A Primer for Non-technicians(I)(II) • Study Visit WKStA-Prosecutor's Office for White Collar Crime
PART5	Organizational Integrity	•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I)(II)

IV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2024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

평가지표 수립 방향

1 검토방향

- 범정부적 규제 완화 추진 노력에 발맞춰, 평가 효율화 및 대상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청렴노력도 지표 간소화 기조 유지**
 - ※ (기관 주요의견) ‘국민권익위의 수월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지표 축소’, ‘합리적 평가지표 설정을 통해 효율적 반부패 업무추진 여건 조성’ 등 요청 다수
-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노력 집중 기조 유지**를 통해 평가지표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 평가 실시

2 주요 지표 구성(안)

- (세부지표 수) '22년도 42개 → '23년 33개 → '24년 30개
- (구분) 「추진체계 - 추진실적(가점·감점 포함) - 시책효과성」 체계 유지
 - (추진체계) 각급기관별 규모·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자율적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조성
 - (추진실적 ①) 부패 취약분야 발굴·개선에 집중 가능한 여건 조성
 - (추진실적 ②)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국정과제 추진 관련 지표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 유지
 - (추진실적 ③) 각급기관 시책·사례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 활성화
 - (추진실적-감점지표)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감점 지표 적용 확대 및 부패 신고사건 사후관리 강화
 - (추진실적-가점지표)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범국가적 반부패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가점 부여

2024년도 청렴노력도 지표체계 및 배점(안)

- ◇ (공통)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는 전체지표 적용
 ◇ (특화) 기초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은 특화모형 적용기관으로 특화지표 해당(여부 ○)만 적용
 ◇ (별도) 지방의회는 별도 지표체계 적용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기관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특화 지표 해당 여부
1	추진 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3.2	8	○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4.8		
2	추진 실적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6	20	○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14		
3	추진 체계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취약분야 개선과정의 기관장(고위직) 참여 노력 대표사례	12	12	○
4	추진 실적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7.2	8	○
			■ 직무상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0.8		
5	추진 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 * 지표내감점: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 제출 이행 여부	2	10	○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중앙, 지자체, 교육청 해당) ■ (공직유관단체) 채용·감사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실적 * 지표내감점: 채용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 이행 여부	8		
6	추진 실적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중앙부처·공직유관단체) 공공재정 환수 등 자체점검 실적 * 지표내감점: 이행실태 관리 실적 ■ (지자체, 교육청)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8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 부가금 부과 실적(2점) * 지표내감점: 이행실태 관리 실적	10	10	○
7	추진 실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타기관 교류 횟수 및 권고 수용 건수)	7	7	X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특화 지표 해당 여부
8	추진 실적	부패방지 제도 구축	■ 제도개선 권고과제 세부과제 이행률	9	10	X
			■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	1		
9	추진 실적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공유·확산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공유·확산 실적	5	5	O
10-1	추진 실적 (감점)	부패 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국민권익위 이첩 및 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 처리상황 미회신 건수에 따라 감점	-2	-3	O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사례 조치 여부	-1		
10-2	추진 실적 (감점)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 현황	-6	-6	O
10-3	추진 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3	-3.5	O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	-0.5		
11-1	추진 실적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0.5	+1	O
			■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0.5		
11-2	추진 실적 (가점)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	+0.5	+0.5	O
12	시책 효과성	시책효과성 평가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10	10	O

구분	추진체계	배점	100점 (8점)
평가 지표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평가 내용	○ 기관별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기반을 평가		
평가 기준	①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40점)		
	- 기관별 청렴 수준 진단(청렴도 평가 결과, 감사결과 등 분석),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 기관별 업무·조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분량은 기준·제한 없이 자율적 작성, 결재문서로 등재 완료 시 실적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미수립
	'24. 4. 30. 까지 수립	'24. 5. 1. ~ 5. 31. 수립	
	40점	20점	0점
	* 수립일자는 내부 결재문서 결재일 기준(붙임문서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첨부)		
	* 기한 도과('24.6.1.이후) 시 미수립으로 간주		
	②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60점)		
- 각급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협의·논의) 실시			
< 세부 평가기준 >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			미운영
3회 이상	2회	1회	
60점	40점	20점	0점

	< 참고 : 회의 운영방식 > ✓ (방식·시간) 월간·주간 간부회의, 청렴교육 등과 <u>별도로 계획하여 1시간 이상 실시</u> ✓ (주제) 연간 반부패·청렴업무 보고 및 진행상황 공유, 취약분야 개선 계획·방안 등 논의 및 의견수렴 실시 ✓ (회의주재) 기관장 주재 원칙 (기관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근직 차상위직위 간부 주재 회의도 인정) ✓ (참석자) - 회의 주제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연초 반부패 추진계획 공유 차원의 회의 운영 시 주요 간부 이상 참석(중앙부처 기준 과장급 이상) -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토론회·민관협의회 등도 인정 가능하나, 기관장 주재 필수 ✓ (감점) 기관장이 아닌 부기관장 또는 상임감사(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 주재 회의 시 1회당 5점 감점 / 기관장·부기관장, 상임감사(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가 아닌 간부가 회의 주재 시 실적 미인정 ✓ (불인정 사례예시) 서면회의(자료만 공유하는 경우), 각종 기념식 등 행사에서 기관장 인사말씀, 청렴교육 시 인사말 또는 질의응답 등
평가 자료	○ 기관별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6월 초 제출, 별도 공문 안내 예정) ○ 회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등 증빙자료(보고서 내 사진 첨부 필수)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20점)								
평가 지표	2.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평가 내용	○ 각급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 전반을 평가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①+② 총점을 기관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후 최종점수 산정 * 기관유형 구분 :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자체·교육청 / 기초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정성평가)										
	- 각급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통해 기관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자율적·능동적 시책 추진 도모										
	<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배점</th></tr><tr><td>①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td><td> • 분석수단·방법의 적합성, 관계자 의견수렴 적정성, 부패취약분야 도출 근거·배경 및 부패연관성, 개선전략의 타당성 등 * 청렴도 평가 결과,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기관 고유업무 특성, 기관 내·외부 관행, 유사기관 감사사례 등 분석 실시 </td><td>30점</td></tr><tr><td>②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td><td> • (실효성)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부패통제 및 독점· 재량권 개선 효과, 체계성, 환류를 통한 시책의 지속성 등 • (이행수단 적정성·독창성) 기존 접근방식과의 차별성, 기존 수단 활용의 개선 수준,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td><td>70점</td></tr></table>			구분	내용	배점	①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 분석수단·방법의 적합성, 관계자 의견수렴 적정성, 부패취약분야 도출 근거·배경 및 부패연관성, 개선전략의 타당성 등 * 청렴도 평가 결과,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기관 고유업무 특성, 기관 내·외부 관행, 유사기관 감사사례 등 분석 실시	30점	②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 (실효성)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부패통제 및 독점· 재량권 개선 효과, 체계성, 환류를 통한 시책의 지속성 등 • (이행수단 적정성·독창성) 기존 접근방식과의 차별성, 기존 수단 활용의 개선 수준,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구분	내용	배점									
①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 분석수단·방법의 적합성, 관계자 의견수렴 적정성, 부패취약분야 도출 근거·배경 및 부패연관성, 개선전략의 타당성 등 * 청렴도 평가 결과,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기관 고유업무 특성, 기관 내·외부 관행, 유사기관 감사사례 등 분석 실시	30점									
②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 (실효성)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부패통제 및 독점· 재량권 개선 효과, 체계성, 환류를 통한 시책의 지속성 등 • (이행수단 적정성·독창성) 기존 접근방식과의 차별성, 기존 수단 활용의 개선 수준,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70점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국민권익위, 2023.6.)」에 따른 부패리스크 식별·평가결과(구분①) 및 부패리스크 경감조치 이행실적(구분②) 등도 필요 시 활용 가능											
< 참고 : 작성 유의사항 > ✓ 부패 취약분야는 다양한 분야·과제를 선정하기 보다는, 각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또는 과제를 특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장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제출 지양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91점
	3등급	82점
	4등급	73점
	5등급	64점
	6등급	55점
	7등급	46점
	미제출	0점
평가 자료	○ 총 2건 정성보고서 제출 * 취약분야 분석 보고서(A4용지 3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6월 초 제출)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보고서(A4용지 4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10월 초 제출)	

구분	추진체계	배점	100점 (12점)							
평가 지표	3.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평가 내용	○ 각급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의 관심·노력도 평가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기관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후 최종점수 산정 * 기관유형 구분 :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자체·교육청 / 기초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정의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대표 사례(정성평가)									
	-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지표에서 설정한 각급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사례를 토대로 고위직의 참여도·노력도·취약분야 연관성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배점</th></tr><tr><td rowspan="2">대표 사례</td><td>•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고위직 참여도·노력도 *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소통노력, 제도개선 추진, 반부패·청렴업무 전담조직·인력 구성·효과적 운영, 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내외 메시지 전파 등</td><td>70점</td></tr><tr><td>• 대표사례와 각급기관에서 설정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td><td>30점</td></tr></table>			구분	내용	배점	대표 사례	•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고위직 참여도·노력도 *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소통노력, 제도개선 추진, 반부패·청렴업무 전담조직·인력 구성·효과적 운영, 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내외 메시지 전파 등	70점	• 대표사례와 각급기관에서 설정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
구분	내용	배점								
대표 사례	•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고위직 참여도·노력도 *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소통노력, 제도개선 추진, 반부패·청렴업무 전담조직·인력 구성·효과적 운영, 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내외 메시지 전파 등	70점								
	• 대표사례와 각급기관에서 설정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관성	30점								
< 참고 : 작성 유의사항 > √ 기관장 또는 고위직 간부가 반부패·청렴 분야에 의지를 갖고 추진한 구체적 '사례'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 √ 기관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시 기관장(고위직 포함)이 참여한 각종 행사·회의 등 실적 나열을 지양										

< 참고 : 작성 유의사항 >

- √ 기관장 또는 고위직 간부가 반부패·청렴 분야에 의지를 갖고 추진한 구체적 '사례'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
- √ 기관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시 기관장(고위직 포함)이 참여한 각종 행사·회의 등 실적 나열을 지양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91점
	3등급	82점
	4등급	73점
	5등급	64점
	6등급	55점
	7등급	46점
	미제출	0점
평가 자료	○ 총 1건 정성보고서 제출 * 대표사례(A4용지 3페이지 이내(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10월 초 제출)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8점)														
평가 지표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평가 내용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평가 ○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행동강령상 직무상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대면집합교육 실시여부 평가																
평가 기준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90점) - 각급 기관의 고위직 교육대상 인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2시간 중 최소 1시간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 * 이수율 = $\frac{\text{고위공직자 교육대상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인원}}{\text{고위공직자 교육대상 인원}} \times 100$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table><tr><th>이수율</th><th>배점</th></tr><tr><td>95% 이상</td><td>90점</td></tr><tr><td>90% 이상 ~ 95% 미만</td><td>78점</td></tr><tr><td>85% 이상 ~ 90% 미만</td><td>66점</td></tr><tr><td>80% 이상 ~ 85% 미만</td><td>54점</td></tr><tr><td>80% 미만</td><td>42점</td></tr><tr><td>교육대상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등 허위실적 제출</td><td>0점</td></tr></table>			이수율	배점	95% 이상	90점	90% 이상 ~ 95% 미만	78점	85% 이상 ~ 90% 미만	66점	80% 이상 ~ 85% 미만	54점	80% 미만	42점	교육대상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등 허위실적 제출	0점
	이수율	배점															
	95% 이상	90점															
	90% 이상 ~ 95% 미만	78점															
	85% 이상 ~ 90% 미만	66점															
	80% 이상 ~ 85% 미만	54점															
	80% 미만	42점															
	교육대상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등 허위실적 제출	0점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조)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zoom, 온라인 화상회의, 구루미 등)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마이크, 웹캠 등이 구비된 경우 대면교육으로 인정																
※ 교육대상 인원 기준 : '24. 9. 30. 기준으로 기관에 재직중인 전체 고위공직자를 의미하며 기관에 적을 두고 휴직, 파견, 장기국외훈련,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고위공직자 및 평가기간('24.1.1.~9.30.)내 고위공직자로 근무하였던 직원도 포함되나, <참고 1> 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교육 대상인원과 이수인원에서 제외하여 실적 제출																	

< 참고 1 : 교육 대상 및 이수 인원에서 제외되는 고위직 >

✓ '24. 7. 1. 부터 고위공직자로 근무

- '24. 7. 1. 이후 고위직으로 신규채용 되거나 고위직으로 승진한 경우
- '24. 7. 1. 이후 학교장, 검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이 고위직이 아닌 직위에서 고위직에 해당하는 직위로 인사이동(전보 등)한 경우
- '24. 7. 1. 이후 전입했거나 타기관에서 파견받은 고위직
- '24. 7. 1. 이후 휴직복직, 파견복귀, 해외지사(해외공관)에서 국내로 전보된 경우
 ※ '24. 7. 1. 이후 휴직복직, 파견복귀, 해외지사(해외공관)에서 국내로 전보 등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실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평가기간내 3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대상에 포함

✓ '24. 7. 1. 까지만 고위공직자로 근무

- '24. 7. 1. 이전 휴직, 파견(공로연수, 국외훈련 등), 해외지사(해외공관)로 인사이동한 경우
 *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공백기간이 없어야 함)했거나,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와 병가 시작일을 휴직 시점으로 산정
- '24. 7. 1. 이전 학교장, 검사,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등이 고위직인 직위에서 고위직이 아닌 직위로 인사이동(전보 등)한 고위직

✓ 기타

- 비상임 임원
- '24. 9. 30. 이전에 퇴직 또는 전출된 고위직

< 참고 2 : 고위공직자 기준 >

기관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기관장 포함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지방의원,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교육자치단체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유치원 및 학교 장이 교육청 등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부여 받아 근무하는 경우 고위직에 포함되나 ※ 단, 7.1. 까지만 고위직으로 근무 했거나, 학교장이나 유치원 장으로만 근무한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공직유관단체		(본사) 다수의 부서(팀, 과, 부, 실 등 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책 ※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임원, 본부장급, 상임감사 등 다수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책보다 상위직위(직급)인 고위직도 포함 (지사 등 소속기관) 본사 고위직과 동일 직급 이상인 직원 ※ 본사의 고위직 중 가장 낮은 직급이 2급인 경우 지사에서 근무하는 2급 이상의 직원 ※ 본사의 고위직이 임금피크제로 본사내에서 고위직이 아닌 직위로 이동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 임금피크제로 소속 기관으로 이동한 경우 직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고위직에 포함	

②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실시(10점)

-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자체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실시여부 평가

- *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①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②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③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세부 평가기준 >

1회 이상 실시	미실시
10점	0점

- ※ (교육내용) ①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②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③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규정」 3개 조항을 반드시 모두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

- * 행동강령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규정」 3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증

- ※ (교육방식) '대면 집합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참고 : 인정기준 >

○ 인정기준

- 행동강령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 보고서에 행동강령 대면교육 시간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등 여러 법령을 함께 교육할 경우(예컨대, 청탁금지법 1시간, 행동강령 1시간) 행동강령 파트에 대한 교육시간을 타 법령 교육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만 인정
- 여러 법령을 포함하여 교육한 결과, 실제로 행동강령 강의는 1시간 미만 경우는 실적 불인정(ex. 총 1시간 강의 중 행동강령 30분, 청탁금지법 30분 강의)

○ (참고) 불인정 사례

- 실시간 화상교육(ex. Zoom, 온나라PC 영상회의, 원격교육 등), 사이버교육
-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유인물 배포
- 인트라넷 게시판 교육자료 게시, 팝업창 등 자료 게시, 교육자료 이메일 전송 등

- ※ (강의자) ① 공공기관장, ②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내부강사양성과정 수료자), ③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 ④ 법률전문가(변호사 자격 보유자 또는 법학 박사), 교수(법학, 경영학, 행정학 교수만 인정) ⑤ 각급 기관 요청에 따라 출강하는 권익위 소속 직원에 한하여 실적 인정

- ※ (지표 4-①와의 중복인정 여부) 행동강령 대면교육에 고위직 간부가 참석한 경우, 4-①지표의 이수율 산정에도 인정 가능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 관련서식 : 실적보고서(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 여부 등)
- * 증빙자료 : 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 제출 시 인정

구분		증빙자료	비고
대 면 교 육	집합교육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실시간 화상교육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결과보고서에 마이크와 웹캠을 구비하고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는 내용 명시 필요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이 확인 가 능해야함
비 대 면 교 육	사이버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시청각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마이크로러닝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 * 상단(표)에 증빙자료로 명시하지 않은 자료는 제출 불가
- * 결과보고서는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이수자 명단(성명 기재)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부결재 처리

②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 관련서식 : 실적보고서(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 여부 등)
- * 증빙자료 : 직무상 갑질 등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평가 내용	○ 청렴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노력 평가 ○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평가											
평가 기준	< 전 공공기관에 해당 >											
	①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20점)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금품수수, 외부강의신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취약분야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횟수)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4회 이상</th><th>3회</th><th>2회</th><th>1회</th><th>미실시</th></tr><tr><td>20점</td><td>15점</td><td>10점</td><td>5점</td><td>0점</td></tr></table>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20점	15점	10점	5점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참고 : 인정기준 >												
✓ (점검주체) 행정기관 본청 또는 공공기관 본사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인정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적으로 불인정 ✓ (점검기간) 노력도 평가 대상기간('23.10월~'24.9월) 중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 (점검대상)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공직자, 해당 기관 본청(본사) 또는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점검을 직접 실시할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예컨대, 중앙행정기관 소관 산하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체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이므로,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은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점검방식) ① 타 점검(예: 복무점검 등)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품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외부강의신고 등 행동강령 관련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예컨대, 출·퇴근시간 등 복무점검, 보안점검,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점검 자료만으로는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행동강령 규정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함 ② 본청 감사부서가 아닌 각 부서로부터 자진 신고, 자율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③ 본청 감사부서 등이 개별 신고사건, 민원을 조사하는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④ 상급 기관의 지시로 이뤄진 점검이라 하여도 본청 또는 본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인정하며, 1개의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점검결과 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

-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어 점검결과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실적 인정)

- 증빙자료는 전자문서시스템(ex. 온나라시스템의 전자문서, 메모보고)에 등록하여 감사부서장 등에게 보고된 문서만 인정

* 전자메일(ex. 온나라시스템의 온메일, 내부인트라넷메일, 코리아메일 등)로 보고된 경우 불인정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지표내 감점 5점)

- '24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9월 예정) 시 기관별 운영현황 자료제출 등 이행 여부

※ 세부 점검항목 및 시기 등은 '24.8월 중 별도 공문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여부	감점없음	-2.5점	-5점

* 요청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에 해당 >

③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자체 규정 반영(80점)

- 각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31개 항목)' 대비 기관별 규정화 항목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자체 규정은 훈령을 포함한 행정규칙 등 공개된 규정을 의미하며, 공개되지 않는 기관 내부 방침 등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5-③번) 이행에 따라 이미 100% 규정화 완료기관(만점 받은 기관)은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5-③) 이행에 따라 규정화를 완료하였으나, 규정 개정 등으로 이행항목 수가 변동된 경우 별도 자료 제출 필요

※ '24년도 자체 규정화 하는 기관의 경우, 사전에 국민권익위(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기관별 자체규정화 이전에 권고 취지 충족여부 안내)' 활용 (공정채용 기준 22개 조문(70%) 미만 반영기관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안내공문* 기발송)

* '제도개선(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사전컨설팅 안내(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364, 2024.1.22. 시행)

< 세부 평가기준 >

$$\text{이행률} = \frac{\text{기관 자체 규정 상 반영* 조항}}{\text{표준기준 상 전체 조항(31개)}} \times 100$$

* 규정에 반영하였더라도, 표준기준의 취지와 상이하게 반영 시 불이행 처리될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00%	80점
90% 이상 ~ 100% 미만	70점
80% 이상 ~ 90% 미만	60점
70% 이상 ~ 80% 미만	50점
70% 미만	40점
미제출	0점

※ 평가 대상기간(~'24.9.30.)까지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인사규정 등에 31개 항목을 반영(개정)한 경우 인정

<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

④ 채용·감사업무 담당자의 '공정채용 전문교육(집합교육)' 이수 실적(80점)

- 채용담당자의 공정채용 규정 미숙지, 감사담당자의 채용분야 관련 정보 제약으로 인한 자체감사 위축 예방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각급 기관 채용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

※ 채용 및 감사담당자는 모두 이수 필요, 각 담당분야별 2명 이상 참여 시 최대 1명까지 인정

(예시) ① 채용담당 3명, 감사담당 0명 이수 ⇒ 50%

② 채용담당 3명, 감사담당 1명 ⇒ 100%

< 세부 평가기준 >

$$\text{이수율} = \frac{\text{참여인원(채용 및 감사업무당 최대 1명 인정)}}{2\text{명(채용담당자 1명 + 감사담당자 1명)}} \times 100$$

< 점수산정 >

구분	배점
100%	80점
50%	40점
0%	0점

< 참고 : 인정기준 >

- ✓ (교육대상) 각급기관 채용 및 감사담당자(실무자급)
- * 감사부서가 없을 시, ① 감사업무 수행자 지정하여 이수하거나, ② 감사부서 부존재 증빙자료 제출하고 채용 담당 1명 추가 이수 시 인정 가능
- ✓ (교육방식)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관으로 매월 실시하는 집합교육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실적 인정
- *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실적 불인정
- * 교육 일정 안내·수요조사 완료('24.1월 중). 단, 집합교육 미신청 기관은 별도 신청 안내 예정

⑤ 채용계획 수립단계 ‘일상감사’ 실시 비율(지표내 감점 30점)

-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자체규정에 따른 주요 채용절차 적정성 점검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⑤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 이후 채용계획 수립단계의 일상감사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24.9.30)동안 ‘일상감사’ 대상 채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여부 평가

※ 일상감사 규정화 이후 일상감사 대상 채용이 없는 경우, 감점 없음

※ '23년도 평가지표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 미반영 기관(전년도 종합 청렴도평가 미실시 기관 포함)은 '24년도 채용분야 ‘일상감사’ 실시 근거가 부재하므로, 금년도 자체 규정화 시 감점 없음

< 세부 평가기준 >

$$\text{실시율} = \frac{\text{일상감사 실시한 채용계획 수}}{\text{일상감사 대상 채용계획 수}} \times 100$$

< 점수산정 >

구분	배점
100%	감점없음
80% 이상 ~ 100% 미만	-4점
60% 이상 ~ 80% 미만	-8점
40% 이상 ~ 60% 미만	-12점
20% 이상 ~ 40% 미만	-16점
20% 미만	-20점
관련자료 미제출 * '일상감사' 자체규정 미반영 경우도 동일 배점	-30점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점검구분, 점검기간, 점검사항 * 증빙자료 : 행동강령 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실시한 점검별로 폴더 생성하여 제출) ②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③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이행실적) * 증빙자료 : 관련 자체규정 파일(작년 대비 이행항목 수 변동된 경우, 개정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등 개정검토자료 포함) ④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교육 이수실적) * 증빙자료 : 해당직무(채용/감사) 담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등 ⑤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일상감사 이행실적) * 증빙자료 : 평가 대상기간 중 일상감사 대상 채용계획 및 일상감사 실시결과 등 자료 * '23년도에는 규정화 미완료 기관 중 '24년도에 자체 규정화 완료기관은 관련 자체규정 파일 제출
----------	---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평가 내용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자체점검, 환수·제재 부가금 부과 처분실적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관리 실적 평가								
평가 기준	<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								
	①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100점)								
	○ 해당기관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연 2회</th><th>연 1회</th><th>미실시</th></tr><tr><td>100점</td><td>70점</td><td>0점</td></tr></table>			연 2회	연 1회	미실시	100점	70점	0점
	연 2회	연 1회	미실시						
100점	70점	0점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공공재정 중 특정 예산분야에 대한 연 2회 자체점검 시 실적 인정									
< 참고 :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점검주체) 해당기관 본부·본청(감사·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 인정 - 타 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점검내용 필수 포함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 불인정 ✓ (점검대상) 해당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 중 예산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등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음에도 공공재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실적 불인정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경우(예: 검찰청) 공공재정(예: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점검방식) 공공재정지급금의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등 점검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결과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1개의 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결과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계획 및 결과 1:1 매칭 필수) ※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점검계획 및 결과는 회당 각 A4 2페이지 이내 작성)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예: 2024.1.15.~2.2., 보조금감사팀장 등 4인) - 점검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및 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등 10개, 20억)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여부
(예: 허위청구 ○건, 목적외 사용 ○건)
- 해당기관의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환수 등 제재처분 건수, 처분 금액 및 사례 기재 필수, 예: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처분 ○건, 환수처분 금액 ○원 /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
- ※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제출 불필요

② (지표 내 감점) 이행실태 관리 실적 (최대 30점)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대한 이행실태 관리 내역 평가

-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 제재처분 실적 제출 내역 평가
(2회, '24.2~3월, '24.7~9월 점검 예정)

* 각급 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공문 제출(세부 방법·일정 등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기한 내 미제출 ¹⁾	기한 내 제출		제재처분 사실 누락·오류 적발시 ³⁾
	보완요구 ²⁾ 미발생	보완요구 ²⁾ 발생	
-10점	0점	-5점	건당 -5점

1)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 제출 기한을 경과한 경우

2)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전화, 이메일을 통한 경미한 보완요구 등은 적용 제외)

3) 해당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국민권익위에 공문 제출 완료 후, 언론기사 등에 의해 제재처분한 사실의 누락·오류가 확인될 경우 건당 5점 감점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청에 해당 >

①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80점)

○ 해당기관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연 2회	연 1회	미실시
80점	50점	0점

※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 전 기관에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참고 :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 **(점검주체)** 해당기관 본부·본청(감사·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 인정
 - 타 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점검내용 필수 포함
 -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 불인정
 - ※ 단,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도 실적 인정
- ✓ **(점검대상)** 해당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 중 예산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등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음에도 공공재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실적 불인정
 - 권익위에서 이행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자체점검 실적으로 불인정
- ✓ **(점검방식)** 공공재정지급금의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등 점검
-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결과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1개의 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결과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계획 및 결과 1:1 매칭 필수)
 - ※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점검계획 및 결과는 회당 각 A4 2페이지 이내 작성)
-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예: 2024.1.15.~2.2., 보조금감사팀장 등 4인)
 - 점검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및 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등 10개, 20억)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확인 여부
 - 해당기관의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실시여부
(환수 등 제재처분 건수, 처분 금액 및 사례 기재, 예: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처분 ○건, 환수처분 금액 ○원 /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

②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20점)

-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및 교육청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노력을 평가
- '21년~'23년 상반기(최근 3년간) 이행실태관리 점검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의 평균 대비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의 평균을 평가

*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도	$= \frac{\text{'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점검결과 환수 및 제재부가금1) 부과율3)의 평균}}{\text{'21년~'23년 상반기 점검결과 환수 및 제재부가금2) 부과율3)의 평균}} \times 100$
-------------------	--

※ '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시에는 '24년도 하반기('24.7.1.~12.31.) 및 '25년도 상반기('25.1.1.~6.30.) 실적을 평가에 반영 예정

- 1) '23년 하반기('23.7.1.~12.31.) 및 '24년 상반기('24.1.1.~6.30.)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금액(처분 금액 기준이며, 실제 환수된 금액이 아님)
- 2) 해당 기관의 해당연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금액(처분 금액 기준이며, 실제 환수된 금액이 아님)

$$3) \quad * \text{부과율} = \frac{\text{해당연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금액의 합계}}{\text{해당연도 공공재정지급금 최종 예산액(이전 자원 제외)}} \times 100$$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은 반기별 이행실태관리 점검 시 해당 행정기관이 권익위에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2회, '24.2~3월, '24.7~9월 점검 예정)

※ 예산규모('24년 예산액은 '24.6월말 기준), 반기별 이행실태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확인·수정 요청 예정(세부방법·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기준	배점
120% 이상	20점
100% 이상 ~ 120% 미만	15점
50% 이상 ~ 100% 미만	10점
0% 초과 ~ 50% 미만	5점
0%	0점

※ '21년~'23년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은 없으나,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이 있는 기관은 일괄 10점 부여

※ 다만, '21년~'23년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과 관계없이,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점검결과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율의 평균이 기관 그룹별(광역/기초시/기초군/기초구/교육청) 상위 30%인 기관의 경우 만점(20점) 부여

③ (지표 내 감점) 이행실태관리 실적 (최대 30점)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 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포 등)에 대한 이행실태 관리 내역 평가

-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 제재처분 실적 제출 내역을 평가
(2회, '24.2~3월, '24.7~9월 점검 예정)

* 각급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공문 제출(세부 방법·일정 등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기한 내 미제출 ¹⁾	기한 내 제출		제재처분 사실 누락·오류 적발시 ³⁾
	보완요구 ²⁾ 미발생	보완요구 ²⁾ 발생	
-10점	0점	-5점	건당 -5점

- 1)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 제출 기한을 경과한 경우
- 2)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전화, 이메일을 통한 경미한 보완요구 등은 적용 제외)
- 3) 해당기관의 환수 등 제재처분 사항을 국민권익위에 공문 제출 완료 후, 언론기사 등에 의해 제재처분한 사실의 누락·오류가 확인될 경우 건당 5점 감점

<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

①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100점)

- 해당기관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의 집행(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여부 확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 등(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연 2회	연 1회	미 실시
100점	70점	0점

-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공공재정 중 특정 예산분야에 대한 연 2회 자체점검 시 실적 인정

< 참고 :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 (점검주체) 해당기관 본부(감사·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추진한 점검만 실적 인정
 - 타 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점검내용 필수 포함
 - ※ 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등은 실적 불인정
- ✓ (점검대상) 해당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소속기관 포함) 중 예산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등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있음에도 공공재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실적 불인정
 -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예: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 (점검방식) 공공재정지급금의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확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등 점검
- ✓ (실적증빙) 점검계획 및 결과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1개의 계획에 따른 점검은 그 결과보고서가 다수라 하더라도 1회 점검으로 인정(계획 및 결과 1:1 매칭 필수)
 - ※ 점검계획 및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필수 포함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점검계획 및 결과는 회당 각 A4 2페이지 이내 작성)

	√ (점검계획 및 결과 필수 포함사항)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예: 2024.1.15.~2.2., 보조금감사팀장 등 4인) - 점검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및 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등 10개, 20억)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확인 여부 - 해당기관의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환수 등 통보 건수, 환수통보 금액 및 사례 기재, 예: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통보 ○건, 환수통보 금액 ○원 /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제출 불필요
평가 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엑셀 파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7점)							
평가 지표	7.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평가 내용	○ 청렴시민감사관 등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적극 반영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평가									
평가 기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100점, 정량)									
	- 청렴시민감사관의 교류, 제도개선 권고 등의 활동이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배점</th></tr><tr><th>0건 (기본 점수)</th><th>1건</th><th>2건</th></tr></table>			구분	배점			0건 (기본 점수)	1건	2건
	구분	배점								
0건 (기본 점수)		1건	2건							
<table><tr><td>(1)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2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사례 1회당 20점(최대 2회)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1명 이상 참석하면 인정 ※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실적도 인정(1회만 인정) ※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지역 청렴클러스터 등 기관간 정기적 협의회 참석도 인정</td><td>10점</td><td>20점</td><td>40점</td></tr></table>			(1)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2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사례 1회당 20점(최대 2회)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1명 이상 참석하면 인정 ※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실적도 인정(1회만 인정) ※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지역 청렴클러스터 등 기관간 정기적 협의회 참석도 인정	10점	20점	40점				
(1)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2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사례 1회당 20점(최대 2회)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1명 이상 참석하면 인정 ※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실적도 인정(1회만 인정) ※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지역 청렴클러스터 등 기관간 정기적 협의회 참석도 인정	10점	20점	40점							
<table><tr><td>(2) 권고에 대한 수용 건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사례 1건당 30점(최대 2건) ※ 회의가 서면으로 실시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권고 등에 대한 의견(권고)서 및 수용결과 통보서(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td><td>10점</td><td>30점</td><td>60점</td></tr></table>			(2) 권고에 대한 수용 건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사례 1건당 30점(최대 2건) ※ 회의가 서면으로 실시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권고 등에 대한 의견(권고)서 및 수용결과 통보서(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	10점	30점	60점				
(2) 권고에 대한 수용 건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사례 1건당 30점(최대 2건) ※ 회의가 서면으로 실시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권고 등에 대한 의견(권고)서 및 수용결과 통보서(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	10점	30점	60점							

	< 참고 : 권고 사안의 인정 범위 > ✓ 반부패·청렴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분야와 밀접한 내용에 한정하여 인정 - 청렴도와 관련이 없는 단순 시설 개선, 단순 민원 처리는 인정 불가 ✓ ‘권고에 대한 수용건수’는 구체적인 조치완료 시기가 명시된 실행계획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 가능 - 조치 이행·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25년도 평가에 반영 예정’ * 별도 서식 등 안내 예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1) 교류 건수, (2) 권고 수용 건수 등 ※ 증빙자료 : (1), (2) 관련 증빙 자료(공문서) 등,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규정 및 위촉 근거자료

구분	추진실적	배 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8. 부패방지 제도 구축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유도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권고과제 이행률과 조치기한 준수율을 평가								
평가 기준	①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률(90점)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참고 : 평가 대상 세부과제 > ✓ (신규) '23.10.1.~'24.9.30.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 (재점검) 기존 평가 대상 과제 중 재점검이 필요한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 ✓ (전년도 미이행) 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 과제								
	* 권고내용(의결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이행실적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이행완료로 인정								
	②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10점)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중 조치기한 내 이행완료로 평가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세부과제별 조치완료 일자를 실적보고서에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재점검 과제, 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는 '24.9.30.을 조치기한으로 간주								
	<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구분</th><th>평가방법</th></tr><tr><td>세부과제 이행률</td><td>$\frac{\text{이행완료 세부과제 수}}{\text{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times 90\text{점}$</td></tr><tr><td>조치기한 준수율</td><td>$\frac{\text{조치기한 내 이행완료 세부과제 수}}{\text{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times 10\text{점}$</td></tr></table>			구분	평가방법	세부과제 이행률	$\frac{\text{이행완료 세부과제 수}}{\text{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times 90\text{점}$	조치기한 준수율	$\frac{\text{조치기한 내 이행완료 세부과제 수}}{\text{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times 10\text{점}$
구분	평가방법								
세부과제 이행률	$\frac{\text{이행완료 세부과제 수}}{\text{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times 90\text{점}$								
조치기한 준수율	$\frac{\text{조치기한 내 이행완료 세부과제 수}}{\text{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times 10\text{점}$								
	※ 기관별 세부과제는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5월중)								
평가 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 실적자료(필수, 엑셀 서식) : 평가대상 세부 권고과제 이행실적 목록 * 실적자료(필수, 한글 서식) : 각 세부 권고과제별 이행실적 보고서(개정 조문 발체 등 포함) *증빙자료(필요시) : 이행실적 보고서(한글 서식)만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제출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5점)														
평가 지표	9.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공유·확산																
평가 내용	○ 각급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실적 등을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기관별 벤치마킹 및 청렴시책 추진 활성화 여건 조성																
평가 기준	○ 각급기관의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공유·확산 노력(정성평가)																
	- 각급 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반부패 시책 중 청렴수준 향상에 효과적이고,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는 우수사례를 「청렴 포털」에 게시																
	* 공개메뉴 : 대국민 청렴포털(www.clean.go.kr)>청렴자료실>활동·홍보자료>청렴활동																
	* 작성대상 시책 : 최근 3년간(‘21년도~’23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중 선정(단, ‘21년도~’23년도 미평가기관은 자율선정)																
	<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구분</th><th>평가기준</th></tr><tr><td>우수사례 적정성</td><td>• 각급기관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해당여부 • 타 기관 도입 및 확산 가능성</td></tr><tr><td>우수사례 충실성</td><td>• 추진과정·방법 등 추진내용의 구체성·충실성 •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제시 여부</td></tr></table>			구분	평가기준	우수사례 적정성	• 각급기관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해당여부 • 타 기관 도입 및 확산 가능성	우수사례 충실성	• 추진과정·방법 등 추진내용의 구체성·충실성 •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제시 여부								
	구분	평가기준															
	우수사례 적정성	• 각급기관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해당여부 • 타 기관 도입 및 확산 가능성															
	우수사례 충실성	• 추진과정·방법 등 추진내용의 구체성·충실성 •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제시 여부															
	< 최종점수 산정 >																
<table><tr><th>구분</th><th>배점</th><th>비율</th></tr><tr><td>A등급</td><td>100점</td><td>제출기관의 30%</td></tr><tr><td>B등급</td><td>85점</td><td>제출기관의 40%</td></tr><tr><td>C등급</td><td>70점</td><td>제출기관의 30%</td></tr><tr><td>미제출</td><td>0점</td><td>-</td></tr></table>			구분	배점	비율	A등급	100점	제출기관의 30%	B등급	85점	제출기관의 40%	C등급	70점	제출기관의 30%	미제출	0점	-
구분	배점	비율															
A등급	100점	제출기관의 30%															
B등급	85점	제출기관의 40%															
C등급	70점	제출기관의 30%															
미제출	0점	-															
※ ’24.6.28.까지 청렴포털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처리																	

	< 참고 : 우수사례 공유 방식 > ✓ (내용) 각급기관에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추진한 시책 등 * 최근 3년간('21년도~'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실적보고서 중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로 제출한 내용을 활용하여 양식에 맞춰 정리하여 게시 * 기관별로 추진한 시책 중 특색있고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례 위주로 선정 * 분량은 A4용지 3페이지 이내 (필요 시 붙임자료 첨부) ✓ (제출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청렴마당>청렴활동 메뉴에서 '대국민공개'로 등록 * 게시물 제목 : '(기관명) 청렴 시책 추진 우수사례' ✓ (내용구성(안))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 추진 시 애로사항, 애로사항 극복방안 등으로 구성 * 세부 서식은 별도 통보 예정(5월) ✓ (제출일정) '24.6.28.까지 등록시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게시여부 및 게시일자 등 * 증빙자료 : 등록내용 캡처본 등 * 시스템 관련 문의 : 1811-8338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점								
평가 지표	10-1.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평가 내용	○ 부패·공익 신고사건의 내실있는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신고사건 사후관리 등을 평가										
평가 기준	① 국민권익위 신고 이첩·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감점 최대 2점)										
	<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구분</th><th>배점</th></tr><tr><td>• 장기 미통보 사건이 20건 이하인 경우</td><td>•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건당 -0.1점(최대 -2.0점)</td></tr><tr><td>• 장기 미통보 사건이 21건 이상~100건 이하인 경우</td><td>•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0.6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2점 • 미회신율 0% : 0점</td></tr><tr><td>• 장기 미통보 사건이 101건 이상인 경우</td><td>•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0.5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1점 • 미회신율 0% : 0점</td></tr></table>			구분	배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0건 이하인 경우	•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건당 -0.1점(최대 -2.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1건 이상~100건 이하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0.6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2점 • 미회신율 0% : 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101건 이상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0.5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1점 • 미회신율 0% : 0점
	구분	배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0건 이하인 경우	•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건당 -0.1점(최대 -2.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1건 이상~100건 이하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0.6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2점 • 미회신율 0% : 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101건 이상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4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1.0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0.5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1점 • 미회신율 0% : 0점									
	* 미회신율 = $\frac{(\text{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text{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text{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text{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사건}^{**}}$										
	** 이첩·송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이첩·송부사건 중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점검기간(상·하반기 각 1회) 중 이첩·송부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										
	*** 형사처벌(기소의견 송치 등), 행정조치 등 수사·조사 결과, 재판 등 진행상황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건										
< 참고 : 점검 대상 및 인정기준 >											
✓ 점검기간은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상반기(3~5월 중), 하반기(7~9월 중) 점검하며, 점검기간 내 처리상황을 회신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의 신고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이첩한 경우 1건으로 집계											
<table><tr><th>구분</th><th>점검대상</th></tr><tr><td>이첩사건</td><td>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td></tr><tr><td>송부사건</td><td>조사결과 통보의무('19.10.17 이후, 부패방지권익위법 기준으로 일원화)가 있는 송부사건 중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td></tr></table>			구분	점검대상	이첩사건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보의무('19.10.17 이후, 부패방지권익위법 기준으로 일원화)가 있는 송부사건 중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구분	점검대상										
이첩사건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보의무('19.10.17 이후, 부패방지권익위법 기준으로 일원화)가 있는 송부사건 중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감점 최대 1점)

- '24년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결과, 각급기관이 '23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접수 및 처리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 시정조치 여부 평가

*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위반행위자 과태료 미통보 등

- 실태점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에 제출한 '23년 신고사건 중 국민권익위에서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감독기관 및 해당기관(감독기관을 통해)에 사전 통보('24년 상반기) 예정

- 평가 대상기간(~'24.9.30.)내에 시정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상기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간('24.9.30.)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감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		0점
감독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산하기관 ¹⁾ 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²⁾ 여부로 판단)	-1점
해당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1점

- 1)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그 외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평가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감독기관에 사전 통보('24년 상반기) 예정

- 2) 감독기관의 산하기관(비평가 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는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이행 노력에 따라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인정(단, 이행 여부 1회 확인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2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이행 점검하였더라도,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감독기관의 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산하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등)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에 감점 적용

- 통보 사례가 다수인 경우 부적절 처리 사례가 남아있으면 감점
-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미제출한 부적절 처리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평가 자료	①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②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회신 공문, 관련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통보사례, 조치결과 등 ※ 증빙자료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로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시정조치 실적 및 조치 근거자료 (부적절 처리 사례 사전 통보 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	--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6점
평가 지표	10-2.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평가 내용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현황 평가		
평가 기준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제출 및 위반자 조치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에 기관별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미제출 및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누락 시 감점		
	* ‘제출완료’ 처리를 누락한 경우 포함, 세부사항은 반기별 발송하는 입력안내 공문 참고		
	** 권익위 자체 점검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누락 확인 시 감점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발생 시 국민권익위의 해임(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구 및 고발 요구 불이행 시 감점		
*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발생 시, 해당기관(감사부서)에 별도 공문 통보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5점
평가 지표	10-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평가 내용	○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 및 사후관리 수준,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피신청기관의 업무 협조도를 평가		
평가 기준	①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감점 최대 3점)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자 보호사건 중 인용결정에 대한 최근 3년간 피신청기관의 이행 여부를 누적 평가 - 평가 대상 사건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사건 수의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21.10월 ~ '24.9월) 처리된 보호사건 인용 결정 		

구분	추진실적	가점	최대 1점
평가 지표	11-1.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평가 내용	○ 청렴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4년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멘토기관을 대상으로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향상 정도와 ② 멘토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①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최대 0.5점)		
	-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해당 컨설팅 그룹(1개 멘토기관당 2~3개 멘티기관으로 구성)내 멘티기관의 '23년도 대비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향상된 경우,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멘토기관에 점수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멘티기관 종합청렴도('24년) 등급 상승도 ※ 총점 = (1단계 상승 기관수 x 0.1) + (2단계 상승 기관수 x 0.2) + (3단계 상승 기관수 x 0.3) + (4단계 상승 기관수 x 0.4) 단, 최대 합산 0.5점		0.5점
평가 기준	②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최대 0.5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멘토기관의 노력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멘토기관 추진노력 평가 * 전담지원인력 구성 및 참여 적극성, 자유회의 개최 횟수, 우수 시책 공유의 적극성,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등		0.5점
평가 자료 목록	①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②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멘토기관에 한정)		

구분	추진실적	가점	0.5점
평가 지표	11-2.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평가 내용	○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공직자의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장려		
평가 기준	○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반영한 실적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점수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사례	사례당 0.1점(최대 0.5점)	
	※ 가점대상 : 국민권익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종합청렴도 평가기간(2023.10.1. ~ 2024.9.30.) 기관에서 반영된 사례		
평가 자료 목록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및 사례별 보고서(사례별 2페이지 이내) ※ 증빙자료 : 국민권익위 의견제시를 받고 소관기관이 처리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회신한 공문 첨부		

구분	시책 효과성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12. 시책 효과성 평가(설문조사)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에 대한 실질적 추진 효과를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수화		
	○ 총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설문항목 간에는 동일한 가중치 적용		
	< 효과성 평가 설문 항목 >		
	순	항목	
	1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2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3	청렴교육 이행		
4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5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평가지표 1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 기관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표준서식
 - 작성분량 : 기준·제한 없이 자율적 작성
 - 제출시기 : '24년도 6월 중 * 별도 공문 안내 예정(5월 말)
 - 주요 내용 구성 :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 구성

<< 표준 서식 >>

* 예시이므로, 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청렴수준 분석

- 기관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분석, 부패취약분야 발굴
- 최근 감사 지적사항, 징계 현황, 미흡·우수기관 사례 등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여건

- 대내·외 환경 및 내부 역량 분석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반부패·청렴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에 따른 기관별 특화사업 발굴 필요성 검토
- 소관 또는 유사한 업무 관련 각종 부패관련 언론보도 등 분석

■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전략

- 비전과 목표, 세부 과제 등을 글, 그림(도식화) 등 기관 자율적으로 체계화

■ 세부 추진과제 실행계획

-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제 수는 기관 자율)

평가지표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①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 작성분량 : A4용지 3페이지 이내 * 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 제출시기 : '24년도 6월 중 * 별도 공문 안내 예정(5월 말)
- 주요 내용 구성 :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 구성

« 주요 분석 방법 예시 »

* 예시이므로, 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내·외부 평가 결과

-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및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 지자체 평가, 경영평가, 상임감사 평가 결과
- 자체 진단·평가 결과 등

■ 기관 고유업무 특성 반영

- 재량권이 큰 업무에 대해 통제 강화 방안 발굴
- SWOT 등 다양한 분석 tool 활용
- 인적 구성·조직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유발요인 진단
- 기관 내·외부 관행 개선필요 사항
- 반부패·청렴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분석 등

■ 각종 감사 결과 및 언론보도

- 상급기관 또는 자체 감사 결과, 주요 부패사건 및 징계사례 등
- 각종 언론보도 사례 분석(유사기관 사례 활용 가능)

■ 다양한 의견수렴

-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 외부인 참여 협의체 의견 등

* 필요 시, ‘관련근거’ 명시(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압축파일로 제출

<< 작성 예시 >>

* 예시이므로, 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은 기관별 자율 구성]**

·
·
·

☐ **[필수 포함] 2024년도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

* 중점 개선과제의 구체적 목표와 수단 등을 글, 그림(도식화) 등 기관 자율적으로 체계화해서 표현 가능

②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 작성분량 : A4용지 4페이지 이내 * 표지 및 증빙자료 목록 별도
- 제출시기 : '24년도 10월 초
 - * 청렴노력도 평가 실적자료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 주요 내용 구성 :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 구성
 - * 주요 개선방안의 추진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 글자크기 15 포인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거자료 목록은 정해진 분량(4페이지) 외에 붙임 자료를 제출 가능
 - * 외부 용역업체 등을 통한 실적보고서 작성 위탁 금지

« 작성 예시 »

* 예시이므로, 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4페이지 이내)

☐ 추진배경 및 문제점 (1/2 page 내외)

- 과제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현황, 문제점, 원인 등

☐ 추진내용 및 실적

- 개선방안, 추진실적(활동) 등
-
-

☐ 파급효과(성과) (1 page 내외)

-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근거자료】

- *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기입(목록만 작성, 별도파일 송부 불필요)

<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① [고용노동부]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투명성 강화

- 근로감독 업무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등이 방문·우편 접수로 이루어져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 진단
- 「노동포털」을 통해 모바일로 근로감독 관련 신고·접수 및 진행상황 확인까지 가능토록 개선하여 투명성 제고

② [국세청] 국고수납 공무원의 횡령 및 사적유용 방지체계 마련

- 전국 133개 세무서 관리실태 전수점검('23.3.~4월) 및 국고금 수납 업무 이원화(전산입력, 통장출금 담당자 분리)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월별 순환근무제 도입
- 국고금 출금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국고금 출금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23.9.)

③ [서울 강남구] 데이터 기반 부패취약분야 진단·도출

- 자체 클린콜 운영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세입·세출구조 특성 분석, 부패 취약 업소 최다 밀집지역, 고충민원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진단·도출하고 전략과제 수립

④ [경상남도교육청]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계약업무 프로세스 개선

- 내·외부 의견수렴, 감사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약업무 취약요인(과도한 서류 요구, 요청서류 상이 등) 도출 및 TF 구성
- 관련부서 협업, 전문가 자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존 10종이었던 서류를 1종으로 통합하고, 담당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업무절차 표준화

* 업무프로세스 개선 만족도 : 계약상대방 88.7%, 계약담당자 90.7%

⑤ [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 AI 기반 입찰담합포착시스템 도입·운영

- 과거 전자입찰 데이터 DB화·분석을 통한 담합 패턴 도출 및 의심 모델 정형화, 알고리즘 AI 학습을 통해 담합행위 발전사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 업체간 투찰시간 및 가격 편차, 재입찰 시 입찰가격 편차 등을 종합 분석
- 계량화된 유형별 담합 확률 정보를 확인하고, 담합 포착 시 담합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위 제소여부 결정에 활용

⑥ [한국은행] 반부패 법령 검색기반 대화형 플랫폼 「청렴 Chat GPT」 도입

- ‘계약 및 관리’, ‘예산집행’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들이 규정 미숙지로 부패 노출 예방을 위해 반부패 관련 법령·규정 검토, 사례조사 등이 가능토록 AI 기술을 활용한 Chat GPT 개발(‘23.9.)
- 1회 검색을 통해 가장 관련성 높은 규정 뿐만 아니라 타 규정에서 규율하는 기타 준수사항 및 각종 신고서식 등을 동시에 표출

<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

① [기상청] 상향식 인사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종합청렴도 평가 및 자체 설문조사 등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 도출, 기관장의 강력한 개선의지 표명, 간부·직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 직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구체화, 인사운영 기준 전면 개편(승진·전보·정보공개 기준, 인사 비위행위 감시) 및 지침 개정 등 실시
 - * 인사업무 공정성 지수 : 전년대비 12% ↑, 청렴문화 지수 10% ↑

② [경상북도] 갑질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

-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마련, 익명성 보장 청렴 챗봇 개설, 고위직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 대응체계 개편을 위해 도와 시·군 협력체계 구축,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익명성 보장)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등 실시
 -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 : ‘21년 17.4% → ‘23년 10.9%로 감소

③ [광주광역시 복구] 기관 맞춤형 갑질근절 대책 추진

-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및 내부 직원 대상 '반부패 역량진단'을 통해 도출된 '불합리한 갑질 관행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과제로 설정
- 78개 시책에 대한 일몰제 및 불필요한 회의 폐지로 업무 방식 개선
- 내부직원이 체험한 사례를 수집하여 간부공무원이 직접 출연한 영상물 제작·확산, 고위직 주도의 '상급자 식사모시기' 등 관행 개선
- * 내부 구성원 체감도 : 60.3%가 전년대비 낫은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

④ [대한적십자사] 자체적발 부패사건의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 병가 사용 부적정 사례를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최근 3년간 휴가 내역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 보완방안 발굴
- * 감사 지적사항 : 위조 진단서를 통해 총 11차례 106일의 허위병가 시행 적발
- * 전수조사 : 총 641명 935건 진단서 진위 확인 및 기관별 병가사용 현황 등 분석
- 간부·직원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 개정 및 인사·복무 관리시스템 개선까지 연계, 개선 과정을 청렴교육 콘텐츠로 제작·활용하여 직원 공감대 형성

평가지표 3 기관장(고위직 포함) 노력과 리더십

○ 대표사례

- 작성분량 : A4용지 3페이지 이내
- 제출시기 : '24년도 10월 초
 - * 청렴노력도 평가 실적자료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 주요 내용 구성 : '평가지표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지표에서 설정한 각급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의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사례 제출
 - * 기관장 또는 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갖고 청렴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효과(성과) 등
 -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외부 업체 등 작성 위탁 금지
 - * 주요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목록은 붙임으로 별도 첨부(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 관련 근거 자료는 제출 불필요, 현지점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보관

« 작성 예시 »

* 예시이므로, 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명

(3페이지 이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부패취약분야 연관성
 - 기관장(고위직 포함)이 참여 대표사례와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와의 연관성 기술
-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술선수범 필요성
 -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정에서 장애요인과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술선수범 필요성 기술

□ 구체적 활동 내용

- 필요성에 제시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
 - 인력 확충 및 조직신설 등 자원투입, 제도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력 활동,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술선수범 활동 내용 기술

□ 파급효과(성과)

- 기관장(고위직 포함) 활동 결과 나타난 대내·외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근거자료】

*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기입(목록만 작성, 별도파일 송부 불필요)

평가지표 9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 반부패 시책 사례

- 작성분량 : A4용지 3페이지 이내
- 제출시기 : **'24. 6. 28.(금) 까지**
 - * 청렴노력도 평가 실적자료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 제출방법 :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 청렴마당 → 청렴활동 메뉴에서 '대국민공개'로 등록
 - * 게시물 제목 : '(기관명) 청렴 시책 추진 사례'
- 내용구성 : 각급 기관에서 도입·운영한 반부패 시책 중 청렴수준 향상에 효과적이고,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는 사례
 - * 작성대상 시책 : 최근 3년간('21년도~'23년도) 권익위에 청렴노력도 평가('21년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의 실적으로 제출한 사례 중 선정(단, '21년도~'23년도 미평가기관은 자율선정)
 - *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시책이더라도,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가능한 의미있는 사례도 제출 가능
 - * 기존 권익위에 평가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

<< 작성 예시 >>

* 예시이므로, 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명

(3페이지 이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당시책 추진 계기 등 기술

☐ **주요 추진내용**

- 추진과정·방법 등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술

☐ **추진과정 중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 추진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 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 기술
- 장애요인 인지 후 극복·개선한 사례와 방법 등 기술
 - *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시책을 사례로 작성 시 극복방안 생략 가능

☐ **주요 추진성과**

- 시책 추진결과 어떤 변화 및 효과가 있었는지 정량·정성적으로 제시
 - *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시책을 사례로 작성 시 시책 추진 시 개선 필요사항 등 작성 가능

☐ **우수[미흡]사례 선정 사유**

- 해당 시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기술
- 아래 < 표 > 반드시 포함

√ 해당 사례가 '21년도~'23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 과제 제출 년도 * ('21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⑤번, ('22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 과제	'21년 ☐	'22년 ☐
	'23년 ☐	
√ '21~23년도 미평가기관으로 자율과제로 제출 여부	예 ☐	아니오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별 담당자 현황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기관

연번	지표명	주요 내용	부서 및 담당자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청렴조사평가과 * 기관별 담당자 명단 참고 (별도 붙임)
2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청렴조사평가과 * 기관별 담당자 명단 참고 (별도 붙임)
3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취약분야 개선과정의 기관장(고위직) 참여 노력 대표사례	청렴조사평가과 * 기관별 담당자 명단 참고 (별도 붙임)
4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청렴정책총괄과 박중하 사무관(044-200-7616) 박한기 주무관(044-200-7619)
		직무상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행동강령과 김영옥 사무관(044-200-7676) 유어진 주무관(044-200-7670)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 * 지표내감점: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 제출 이행 여부	행동강령과 김영옥 사무관(044-200-7676) 유어진 주무관(044-200-7670)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중앙, 지자체, 교육청 해당) (공직유관단체) 채용·감사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실적 * 지표내감점: 채용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 이행 여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김종혁 사무관(044-200-7127) 배영준 주무관(044-200-7711)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중앙부처·공직유관단체) 공공재정 환수 등 자체점검 실적 * 지표내감점: 이행실태 관리 실적 (지자체, 교육청)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8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 부가금 부과 실적(2점) * 지표내감점: 이행실태 관리 실적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서현우 사무관(044-200-7644) 김시준 주무관(044-200-7646)

연번	지표명	주요 내용	부서 및 담당자
7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타기관 교류 횟수 및 권고 수용 건수)	민간협력담당관실 이지훈 사무관(044-200-7163)
8	부패방지 제도 구축	■ 제도개선 권고과제 세부과제 이행률 ■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	제도개선총괄과 진정인 주무관(044-200-7219)
9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공유·확산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공유·확산 실적	청렴조사평가과 * 기관별 담당자 명단 참고 (별도 붙임) 심사기획과 홍원태 사무관(044-200-7689)
10-1	부패 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국민권익위 이첩 및 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 처리상황 미회신 건수에 따라 감점	심사기획과 신상철 주무관(044-200-7695)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사례 조치 여부	청탁금지제도과 박선미 주무관(044-200-7706)
10-2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 현황	심사기획과 신희석 사무관(044-200-7690)
10-3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신고자보호과 조수연 사무관(044-200-7779)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협조도	
11-1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청렴정책총괄과 박중하 사무관(044-200-7616) 박한기 주무관(044-200-7619)
		■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11-2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	적극행정국민신청팀 한정운 사무관(044-200-7223)
12	시책효과성 평가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청렴조사평가과 * 기관별 담당자 명단 참고 (별도 붙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별 청렴조사평가과 담당자 현황

담당자	담당 기관		
김기용 사무관 ☎044-200-7632 drmarbin@korea.kr	<중앙행정기관(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김혜진 사무관 ☎044-200-7634 sunjine7942@korea.kr	< 시도교육청(17) > 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	담당 기관		
김일문 사무관 ☎044-200-7633 imkim@korea.kr	<광역지자체(17)>	<공직유관단체(32)>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김소리 주무관 ☎044-200-7638 st789621@korea.kr	<지방의회(92)> 광역(17) 기초 시(75)		
연나영 주무관 ☎044-200-7636 yeonna@korea.kr	<지방의회(69)> 기초 구(69)	<공직유관단체(3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금융감독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은행 창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은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보전원

담당자	담당 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거래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김선미 주무관 ☎044-200-7635 ksm4486@korea.kr	<기초지자체 구(69)>	<공직유관단체(34)>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원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수원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
안영인 주무관 ☎044-200-7637 ayi1128@korea.kr	<기초지자체 시(75)>	<공공의료기관(13)>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윤종선 주무관 ☎044-200-7639 pulong1105@korea.kr	<기초지자체 군(82)>	<지방의회(82)> 기초 군(82)	